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2일,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호영의원)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청은 수목원진흥기본계획과 정원진흥기본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산림청은 2024년 3월, “수목원을 통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

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였음.

또한, 산림청은 2021년 1월,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청은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한국정원협회, 한국민간정원협회, 푸르네정원문화센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임의로 의견 청취 대상을 선정하여 조회하고 있음.

즉, 수목원진흥기본계획 및 정원진흥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 하에서는 산림청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방향 및 수단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산림청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